

(유권해석) 개는 돼지에 준하여 축산업보상을 한다.

[국토부 2009. 10. 09. 토지정책과-4714]

질의요지

개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는 돼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